

■ 가족관계등록

● 개요

한국정부는 2007년 4월 27일에 종래의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대체법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의 「호적」에서 국민 각각의 「개인」단위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

종래의 호적	가족관계등록	종래의 호적	가족관계등록
호 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전 적	→ 등록기준지변경
호적등(초)본(1종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5종류)	취 적	→ 가족관계등록창설
본 적 지	→ 등록기준지		

➤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

증명서의 종류	공통기재사항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관,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3대까지 기재 가)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상속 등으로 종래의 호적이 필요한 경우는 종래의 「호적등본」을 「제적등본」으로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등의 각종 신고(신청)

각종 가족관계등록의 신고(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주의! 민단 생활상담 센터에서는 가족관계등록의 신고(신청)의 안내와 대행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민단본부(지부) 또는 관할 총영사관에 문의바랍니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창설허가신고

여권

↔ 항목을 클릭!

▽출생신고

※각종 양식을 클릭하면 다운로드(PDF)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양친이 한국인	<p>□출생신고서(양식)</p> <p>▽일본의 관공서(市区町村役所)에서 발급된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또는 출생수리증명서의 원본과 한글 번역문</p> <p>▽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p> <p>▽신고인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p> <p>▽신고인의 도장</p>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 (복수국적자)	<p>□출생신고서(양식)</p> <p>▽출생사항이 기재된 일본의 호적등본과 한글 번역문</p> <p>▽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p> <p>▽신고인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p> <p>▽신고인의 도장</p> <p>※모친이 일본인으로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친의 혼인전 호적등본과 한글 번역문</p>
한국인과 일본인 외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	<p>□출생신고서(양식)</p> <p>▽일본의 관공서(市区町村役所)에서 발급된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또는 출생수리증명서의 원본과 한글 번역문의 원본과 한글 번역문</p> <p>▽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p> <p>▽신고인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p> <p>※한국의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부친 또는 모친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출생자의 여권이 필요하다</p> <p>※모친이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친이 혼인전에 독신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본국의 서류와 한글 번역문도 필요하다</p>




▽사망신고

구 분	구 비 서 류
한국인의 사망	<p>□사망신고서(양식)</p> <p>▽일본의 관공서(市区町村役所)에서 발급된 사망계 기재사항증명서 또는 사망수리증명서의 원본과 한글 번역문</p> <p>▽사망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p> <p>▽신고인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p> <p>▽신고인의 도장</p>

▽혼인신고

구 분	구 비 서 류
한국인 간의 혼인	<p>□혼인신고서(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관공서(市区町村役所)에서 발급된 혼인수리증명서의 원본과 한글 번역문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양쪽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 ▽부부 양쪽의 도장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	<p>□혼인신고서(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의 호적등본과 번역문, 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한글 번역문+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양쪽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 ▽부부 양쪽의 도장
한국인과 일본인 외의 외국인과의 혼인	<p>□혼인신고서(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관공서(市区町村役所)에서 발급된 혼인수리증명서의 원본과 한글 번역문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외국인의 여권 ▽부부 양쪽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 ▽부부 양쪽의 도장

▽이혼신고<협의이혼의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한국인 간의 이혼	<p> 신고순서 ①한국에 이혼신고 ⇨ ②일본 관공서(市区町村役所)에 이혼신고</p> <p>□협의이혼 의사확인신고서 1부(양식/영사관 비치) □진술요지서 1부(양식/영사관 비치) □이혼신고서 3부(영사관 비치)</p> <p>▽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양쪽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관할 영사관에서 발행) ▽양쪽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 ▽양쪽의 도장</p> <p>※기본적으로 이혼하는 부부 2명이 관할 영사관으로 가서 담당영사와 면담하여 의사를 확인한다 ※일본의 관공서에는 이혼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한다</p>
한국인과 일본인의 이혼	<p> 신고순서 ①한국에 이혼신고 ⇨ ②일본 관공서(市区町村役所)에 이혼신고</p> <p>□<u>이혼신고서</u>(양식)</p> <p>▽이혼사항이 기재된 일본의 호적등본과 한글 번역문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양쪽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 ▽양쪽의 도장</p>
한국인과 일본인 외의 외국인과의 이혼	<p> 신고순서 ①한국에 이혼신고 ⇨ ②일본 관공서(市区町村役所)에 이혼신고</p> <p>□<u>이혼신고서</u>(양식)</p> <p>▽일본의 관공서(市区町村役所)에서 발급된 혼인수리증명서의 원본과 한글 번역문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양쪽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 ▽양쪽의 도장</p>

▽이혼신고<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조 정	<p>□<u>이혼신고서</u>(양식)</p> <p>▽조정조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 ▽신고인의 도장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p> <p>※배우자가 일본인의 경우, 이혼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원본과 한글 번역문</p>
화 해	<p>□<u>이혼신고서</u>(양식)</p> <p>▽화해조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 ▽신고인의 도장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p> <p>※배우자가 일본인의 경우, 이혼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원본과 한글 번역문</p>
판 결	<p>□<u>이혼신고서</u>(양식)</p> <p>▽판결조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확정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 ▽신고인의 도장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p> <p>※배우자가 일본인의 경우, 이혼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원본과 한글 번역문</p>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고 ※가족관계등록(구 호적)이 없어 창설하는 분

구 분	구 비 서 류
창 설	<p>□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고서(양식)</p> <p>▽일본의 관공서(市区町村役所)에서 발급된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또는 출생수리증명서의 원본과 한글 번역문</p> <p>▽일본 주민표의 원본과 한글 번역문</p> <p>▽재외국민등록부등본(관할 영사관에서 발행)</p> <p>▽신고인의 신분증명서(특별영주자(재류)카드, 여권 등)</p> <p>▽신고인의 도장</p>

▽여권 (전자여권) 의 발급

구 분	구 비 서 류
여권의 발급 <신규·갱신>	<p>□여권 (재) 발급신청서 (양식)</p> <p>▽컬러 사진 (3.5cm×4.5cm, 흰색배경, 정면, 흰색복장 불가) ※사진은 엄격한 규정이 있으므로 영사관에 있는 즉석 사진기계로 촬영하는 것을 권장함</p> <p>▽특별영주자(재류)카드의 앞뒷면 복사</p> <p>▽수수료 (일람표 참조) ※여권 갱신의 경우는 쓰던 여권도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p>
복수 국적자 ※일본과 한국의 이중 국적자 (가족관계등록을 한 분)	<p>□여권 (재) 발급신청서 (양식)</p> <p>▽컬러 사진 (3.5cm×4.5cm, 흰색배경, 정면, 흰색복장 불가) ※사진은 엄격한 규정이 있으므로 영사관에 있는 즉석 사진기계로 촬영하는 것을 권장함</p> <p>▽일본의 호적등본과 주민표(한글 번역문도 필요)</p> <p>▽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p> <p>▽수수료 (일람표 참조) ※일본의 여권이 있는 분은 일본여권과 복사본(열글 사진의 페이지) ※한국여권 갱신의 경우는 쓰던 여권과 복사본(열글 사진의 페이지)</p>

■여권 수수료 일람 (2024. 4. 5현재)

여권의 종류		매 수	수 수 료
전자여권	유효기한 10년 (18세 이상 희망자)	58매	6,890엔
		26매	6,500엔
	유효기한 5년 (18세 이상 희망자, 8 ~ 17세 미성년자)	58매	5,850엔
		26매	5,460엔
	유효기한 5년 (0 ~ 7세의 미성년자)	58매	4,290엔
		26매	3,900엔
	유효기한 5년 미만	26매	1,950엔

※상기 수수료는 병경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주일한국대사관 HP <https://overseas.mofa.go.kr/jp-ja/index.do> /TEL 03-3455-2601(대사관 영사부)

참고 재일한국인의 병역에 관하여

병역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원래 재외국민은 국내 적응 및 군복무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재외국민 2세」 제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병역은 면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등 병역기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2012년 병역법 개정에 의하여 일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재일한국인의 경우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정의 조건이란?

➤ 일본에서 출생한 자, 또는 6세 이전에 일본에 입국한 자로 만 17세가 되기전에 본인과 부모가 「특별영주자」 혹은 「영주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단, 하기에 포함되는 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 17세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한국에서 수학한 자

↳만 7세부터 17세까지의 기간중 1년에 통산 90일을 넘게 한국내에 체재한 자

☞ 신청방법은?

➤만 18세부터 관할 때공관에 「재외국민 2세」의 신청이 가능. 인정되면 만 37세까지 병역은 연기(면제)

※단, 여권 갱신마다 신청이 필요

주의 ! 이하의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

●1994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자의 경우

➤본인이 만 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통산 3년을 넘게 한국에 체재

➤부 또는 모가 한국에 영구귀국

●1993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자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본인이 통산 3년을 넘게 한국에 체재

➤2018년 5월 29일 이후 부 또는 모가 한국에 영구귀국

☞ 상기의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관할공관에 문의바랍니다.